

서울에너지공사 케이(K)서울햇빛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

의안 번호	234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4월 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에너지공사는 열병합발전소 부지와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, 케이투코리아(주) 물류창고 등을 활용한 약 6.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중임.
- 나.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 허가 취득과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할 계획임.
- 다. 동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의 2020년 제1회 태양광 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서, 민간부지를 포함하여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 발전소 부지와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·운영을 위해 사업시행법인의 신뢰성이 요구되며, 이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.
- 라. 서울에너지공사가 케이(K)서울햇빛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현금출자를 시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대상

- 1) 기관명칭 : 주식회사 케이서울햇빛발전소
- 2) 출자금액 : 783백만원(자기자본 1,735백만원의 45.1%)

나. 주요사업

- 1) 대표자 선임, 주주총회 개최 등 특수목적법인 운영
- 2)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운영
- 3) 전력판매 및 수익금 적립, 관리

다. 출자 필요성

- 1)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의결권 확보
- 2)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건전성 기여
※ 사업기간(20년) 배당수익: 총 2,394백만원 예상
- 3) 참여사 각자의 전문성과 책임분배를 통해 사업 위험 최소화
- 4) 지분 대비 높은 자기자본 수익률 확보
- 5) 전력판매단가(SMP + REC) 장기 고정 계약(20년) 가능
- 6) 지붕일체형(무타공) 공법을 적용하여 서울에너지공사와 서울교통공사의 노후 건물 지붕 누수 문제 해결

라. 취득되는 권리와 출자에 따른 반대 급부

- 1) 출자지분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주식
- 2) 태양광 발전소 운영수익에 대한 배당수익 수취

마. 취득되는 권리의 처분계획

- 1) 태양광 발전사업 종료 시 보유자산 매각 후 청산
- 2) 태양광 발전사업의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4조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)
- 2) 「지방공기업법시행령」 제47조의2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검토 등)
- 3) 「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0조(사업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첨부자료 : 케이(K)서울햇빛발전사업 추진계획(사장 방침)

붙임 : 케이(K)서울햇빛발전사업 개요

※ 작성자 :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

(팀장 최철웅 ☎ 2133-3552 / 담당 가순중 ☎ 2133-3554)

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햇빛사업부

(부장 정훈택 ☎ 2640-5320 / 담당 최두일 ☎ 2640-5324)

1) 사업개요

가) 사업명 : 케이(K)서울햇빛발전사업

나) 규모 : 약 6.5MW

다) 총사업비 : 9,322백만원(자기자본 1,735백만원)

- 태양광발전설비 1.43백만원/kW 기준

: 건설공사비 8,676백만원, 계통연계비 165백만원, 건설이자 102백만원,
금융 부대비용 379백만원

라) 시행자: 주식회사 케이서울햇빛발전소

- 주주구성: 서울에너지공사(45.1%), K2코리아(44.9%),
아이솔라에너지(10%)

- 대표자: 반준석(아이솔라에너지(주))

- 소재지: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부흥로 171번길 27
(아이솔라에너지(주) 부여공장)

※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시 대표자, 소재지 변경 예정

마) 대상위치: 서울에너지공사 플랜트(목동, 노원), 서울교통공사
차량기지(고덕, 신내), K2코리아 물류창고(이천, 여주)